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9 .21 평창군수(재무과장)
- 나. 회부일자 : 2000. . . .
- 다. 상정일자 : 2000.10.30. 제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 안 이 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거친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 가. 공설테니스장 부지매입
- 나. 용평 농악창작실 매입
- 다. 대화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
- 라.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교환처분
- 마. 교육비 특별회계 재산교환
- 바.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교환취득
- 사. 구경찰서 부지 취득을 위한 균유림 교환

4. 검 토 결 과

-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안은 매입이 3건으로 토지 9필지 9,824㎡, 건물1동 151㎡이며 교환은 4건으로서 취득이 토지 17필지 113,064㎡, 건물 21동 1,753㎡이며 처분은 토지13필지 104,804㎡, 건물 1동 53㎡임.

가. 공설테니스장 부지매입

- 종부교 공사착공에 따른 종부테니스장 이전. 기존테니스장 분산으로 큰대회 유치 지장등은 인정됨.
- 사후관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향후 투자 계획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총규모를 결정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나. 용평 농악창장실 매입

- 전국대회 국무총리상, 도대회 우수상 3회 수상의 경력이 있고 각종 경축행사에 참가 공연하여 평창군을 알리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존 육성하기 위하여 자료 보관실 및 창작연습실이 필요함.
-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나 기존의 건물 (복지회관, 피로연장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대화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

- 기존 보건지소의 부지가 협소한 것이 인정되고 국도비의 보조 사업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라. 선거관리 위원회 부지교환 처분

-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하고 있는 평창군 소유토지 303㎡를 처분하고 농업기술센터 앞쪽 2필지 4,150㎡ 종부테니스장 1,742㎡ 등 총3필지 5,892㎡을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마. 교육비 특별회계 재산교환

- 폐교된 2개초등학교(무이·덕거)토지 7필지 14,131㎡ 건물 21동 1,753㎡를 취득하고, 4개교(횡계, 도성,가평, 호명초등학교)에 편입된 공유지 6필지 14,279㎡와 교환처분 하는 것으로 교환면적은 비슷하며 추정가액으로 볼 때 약 9천 6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

바. 도암하수종말 처리장 교환취득

- 도암 하수종말처리장의 도유지 3필지 8,981㎡와 진부면 구상수도 취수장 부지 토지 4필지 2,015㎡, 건물1동 53㎡(소방파출소 사용)를 상호교환 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사. 구경찰서 부지 취득을 위한 균유립 교환

- 봉평면 무이리 산 204-1번지 88,201㎡의 균유지와 김형수 소유 토지 방림리 산 894번지 82,215㎡, 하리 220-2번지 전 463㎡ 하리 220-3번지 전 235㎡, 하리 220-5번지 전 1,147㎡를 교환 하는 것임
- 취득사유를 살펴보면 군에서는 취득예정 재산인 방림리 소유 토지는 31번 국도 및 평창강과 300M 거리로 택지·관광스포츠 단지등 개발이 가능하고 반면 봉평면 무이리 소재 처분 예정

재산은 최근 경기침체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교환코자 한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며 공유재산관리는 단기처방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전체 국민의 재산임을 감안 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평창읍 하리 220-3번지등 3필지의 교환은 94년 경찰서 이전 계획에 따라 군이 신청자 부지를 취득하여 구경찰서 부지로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소유자 김형수가 협의를 계속 거부하는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군의 필요에 의한 교환 보다는 개인의 요구에 의하여 다른 지역의 임야까지 포함 교환하는 것은 명분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